

『개역개정』 속 ‘자유’ 어휘의 역사적 변화 양상 연구

서신혜*, 이선희**

1. 서론

모든 사상과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 새로운 개념이 수입될 때 선택되는 언어는 새로 생성되거나 이전 단어의 개념 변화를 거쳐 사용된다. 이들 단어들이 언중에게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오해와 마찰의 시간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근대변혁기에도 그랬다. 한국사에서 근대로의 시대 변화와 기독교의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근대 언어와 개념이 근대의 것으로 바뀌는 시기에 성경번역도 이루어졌다.¹⁾ 성경 번역 주체들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오해나 왜곡을 막기 위해 단어 선택에서 크게 고심했고 그 흔적이 성경에 녹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르게 되었는지를 살피려 한다. ‘자유’는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어 중 하나인데,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읽고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읽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 단어에 주목하였다.

* 주저자. 한양대학교에서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sh2448@hanyang.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에서 조선시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yisunhui@cau.ac.kr.

1)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조선까지를 전근대, 갑오개혁을 거쳐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 해방이후를 현대라 한다. 이 연구도 이 같은 구분에 따른다.

또 ‘자유’는 본래 있던 단어를 가져다 근대의 새 개념을 전달하는 번역어로 사용한 대표적 예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대 사회 변화와 각종 개념어의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 ‘자유’가 다루어졌다. 일본 학자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1928-2018)는 근대 시기 번역 문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특히 ‘자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freedom이나 liberty의 번역어로서 ‘자유’가 부적절한 번역어라 기피되고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기간을 거쳐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여러 일본 문헌의 예를 통해 제시했다.²⁾ 최재목은 번역어 ‘자유(自由)’가 중국과 일본에 어떻게 유입되고 개념화되었는가를 자세한 예로 보여주었다. 최경옥도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서 ‘자유’가 사용되고 있는 예를 밝힌 후 개화기 조선에서 ‘자유’가 사용되고 있는 예를 제시하였다.³⁾ 최근에 유경민도 최경옥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동양에서의 번역어 ‘자유’ 사용 용례의 다양성을 밝힌 후, 특히 ‘자유’가 명사가 아닌 서술어로 기능하는 용언형이라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그리스도교 문헌들에서 이런 용례가 잘 나온다는 것을 설명했다.⁴⁾ 이들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동양에 있던 단어 ‘자유’가 근대개념어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자유’라는 단어 사용이 기피되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졌다는 논조도 비슷하다. 그 위에 각각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어학적 어미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켰다. 이 논문 역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 설명에는 비슷한 논조 위에서 있으나, 이런 어휘연구가 오늘날 일반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⁵⁾

2) 야나부 아키라(柳父章), 『Freedom, 어떻게 自由로 번역되었는가』, 김옥희 역 (서울: AK, 2020), 213-233. 참고로, 야나부 아키라가 쓴 이 글은 『翻譯とは何か』라는 제목으로 호세이 법政대학출판부에서 1976년에 출간된 것이다.

3) 최재목, “근대기 번역어 ‘자유’ 개념의 성립과 중국 유입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9 (2005), 385-404; 최경옥, “메이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liberty]가 [자유(自由)]로 번역되기까지 -”, 『비교일본학』 42 (2018), 353-372.

4) 유경민, “‘自由’의 용언형과 다의화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 『언어와 언어학』 94 (2021), 45-72.

5) 신학적인 차원, 신앙 실천 차원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김현진, “희년의 선교적 의미와 실천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1(2020), 629-654; 박정식, “요한복음 8장의 아버지 논쟁에 나타난 자유의 의미”, 『광신논단』 30 (2020), 49-74; 이영현, “바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로 선포한 자유에 대한 성서적 고찰: 갈라티아 서간에 따라 살펴본 자유개념과 신학적인 의미”, 『신학전망』 164 (2009), 2-28 등 여럿이 있다. 하지만 본고는 신학적 의미 파악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 역본에서의 용례 추적을 통한 단어의 어휘 계통 분석법을 통해 우리나라 성경번역본에 나타난 어휘를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신학적 연구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성경 원어를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행 한글 성경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이다. 형이상학적 단어는 개인별로 주관적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높고, 또 각 개인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막연한 채로 읽고 넘어가는 수가 많다. ‘자유’도 그런 단어이다. 지금도 ‘자유’라고 하면 개인별로 ‘방종’과 연관된 개념, ‘천부인권’과 관련된 개념 등으로 각기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를 통해 ‘자유’라는 한 단어로 포괄된 의미 갈래들을 알고 난 후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 자칫 자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구절의 오역을 막아 해당 문맥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분류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낳는다. 이것이 이 연구의 의의가 될 것이다.

지금 쓰는 『개역개정』에서 ‘자유’는 총 57건 나온다. ‘자유’로 번역된 부분이 『성경 개역』(1938, 이하 『개역』으로 표시), 『선한문 관주 구약전서(鮮漢文貫珠舊約全書)』(1926, 이하 『선한문구약』으로 표시), 『신역 신구약전서(新譯新舊約全書)』(국한문, 1925, 이하 『게일신구약』으로 표시)⁶⁾, 『신약전서(新約全書) 국한문』(1906, 이하 『국한문신약』으로 표시), 『성경전서』(1911, 이하 『구역』(舊譯)으로 표시)⁷⁾, 『예수성교전서』(1887)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통하여 어떤 어휘들이 결국 ‘자유’로 귀결되었는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그런 의미 갈래를 알고 나면 ‘자유’로 번역된 각 구절들을 보다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번역자들이 ‘자유’라는 한 단어 사용조차도 고심하였다는 것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6) 『게일신구약』을 포함하는 까닭은, 그것이 1920년대 중반에 이루어져 『구역』에서 『개역』 사이 30여 년 간의 변화를 보기에 적합하며, 게일(J. S. Gale)이 언어에 특히 민감했던 학자였고, 국한문으로 써서 해당 번역어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쉬우며, 또 신약과 구약을 모두 번역하여 『선한문구약』(1926)이 보여주는 1920년대 상황을 보다 폭넓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구역』은 1900년에 신약전서가 완성되었으나 일부 성경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치지 못한 사역이므로 계속 검토하여 공인역으로 1904년에 새로 출간하였지만 표기상의 오류 등이 많아 다시 1906년에 출간했다. 그래서 보통 구역 신약은 1906년을 공인역으로 본다. 나중에 구약이 1911년에 번역되면서 신구약을 합본하여, 결국 『구역』은 1911년이라고 표기한다. 그러므로 구약 번역본을 비교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신약 번역본을 비교할 때에는 표기는 1911이라고 하나 번역 시기상 『국한문신약』(1906)보다 앞서므로 단어 변화를 비교할 때 당연히 『국한문신약』보다 앞에 둔다.

2. 전근대시기 ‘자유’ 개념과 근대 개념 ‘자유’의 유입 시기

우리나라에 근대 개념의 ‘자유’가 들어온 것은 언제이며, 그런 개념의 ‘자유’를 성경번역에서는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본래 전근대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자유’가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 『경국대전』, 문집, 일기 등을 대상으로 ‘자유’의 용례를 검토하면, 한마디로, 전근대시기에 ‘행동거지문제’만을 가리키는 매우 ‘협의’의 용례로만 사용되었다. 사람이 들고 남[出入], 굽히고 펼[屈伸], 앉고 일어섬[坐臥]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할 때 주로 썼다.

『대청률』에 보면, “위(威)는 세력과 기염이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역(力)은 강하고 사나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을 제박한다는 것은 때리는 것뿐 아니라 세력으로 제압하고 위협하여 사람이 진퇴와 굴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게 하는 것이다.”⁸⁾라 하는 대목이 있다. 자유의 용법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실록』 기록에 “방 가운데에 가두어 두고 창구멍을 내어 음식을 통하고, 오줌을 누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⁹⁾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이때 ‘불능자유(不能自由)’라는 것은 움직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유’는 ‘육체적, 행위적 움직임’, 즉 출입(出入), 굴신(屈伸), 좌기(坐起), 좌와(坐臥) 등을 마음대로 하느냐의 문제에 한정된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용하는 ‘자유’보다는 현저하게 좁은 의미[狹義]에만 사용한 단어였다.

예컨대 “간힌 죄인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옥에서 풀려났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전근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옥에 갇힌 죄인이 공식 명령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방석(放釋)’을 썼다. 사극에 가끔 보이듯, 감옥에서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죄인은 큰 칼을 차고 있어서 움직임이 불편하다. 그 칼을 풀어주면 움직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럴 때는 감옥에 갇힌 경우라도 굴신, 좌기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감옥에 있던 죄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라 표현한다면, 그를 감옥에서 내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8) 沈之奇, 『大清律輯註(下)』(北京: 法律出版社, 2000), 287: 威, 謂勢炎足以壓人, 力, 謂強勇足以勝人, 制縛人者, 形容威力所加, 能致人進退屈申, 不得自由, 聽憑鎖繫之也.

9) 『태종실록』 12년 6월 26일: 閉之房中, 穴牖以通飲食, 至洩溺不能自由.

또 전근대에 ‘자유’는 명사가 아니었다. ‘자유’에 ‘-하는’ 혹은 ‘-로운’ 등의 활용형을 붙여서 사용하였다.¹⁰⁾ ‘자유하는’, ‘자유로운’, ‘자유하게 하다’ 등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 명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조선 태종 때 이방의가 “얹고 서는 것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였다.”¹¹⁾라는 내용을 보면, 당시 이방의가 병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얹고 서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기사이다.

이외에도 『실록』에서 ‘자유’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得自由”, “出入自由”, “進退自由”(一身進退, 安敢自由), “不能自由”, “未得自由”로 쓰인다. ‘자유’가 한자어 그대로 ‘스스로의 뜻대로 신체를 움직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요, ‘명사’가 아니라 ‘자유로이 하다’와 같은 식의 활용형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중일 모두 근대 개념인 ‘freedom’이나 ‘liberty’에 대한 번역어로 본래 있던 단어인 ‘자유’를 사용하였다. 본래 ‘기거동작의 문제’에 국한했던 단어를 근대개념인 ‘천부인권적 권리’라는 의미의 단어로 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근대 개념의 ‘자유’는 1890년대에 이미 소개되어, 조정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세에는 황실과 국가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부와 부에서 각각 권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으므로 의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¹²⁾고 고종이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 때 ‘자유’는 분명 ‘권리’라는 근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황성신문」 1899년 2월 17일자 “논설”에서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만 하면 자유권을 들먹이는데, 자유권이란 하늘이 고루 부여하셔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¹³⁾이라면서, 당시 ‘자유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자유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독립신문」 1899년 1월 10일자 1-2면에서도 「인권자유」라는 면에서 말하면서 “늘이 만민을 내히실 재에……인권 자유(言權自由)는 텃신 권리라 하늘이 주신 권리를 엇지 진중히 보존치 아니 헝리오”라고 하는 대

10)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유경민, “‘自由’의 용언형과 다의화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을 참고 바란다.

11) 『태종실록』 3년 8월 1일: 芳毅憔悴無力, 坐立不能自由, 令人扶起, 倚枕而坐.

12) 『고종실록』 37년 4월 20일: 近世則皇室與國家有異, 確有區分矣. 府部各主自由權利, 無相侵越, 不許議政干係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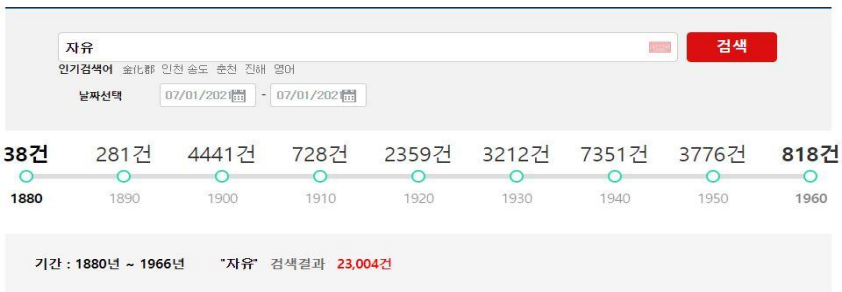
13) 「皇城新聞」 1899년 2월 17일 1면 “論說”: 一人은 一人之權이 有하고 一國은 一國之權이 有하느니라…是故로 近日에 我大韓國人民이 言必稱自由之權이라 하니 其自由權을 能言하느니라 果然 自由權이 何如함을 能知하느니라 夫自由權이란 者는 上天이 均賦하시고 人人이 共得하느니라…

목이 나온다. 「태국신문」 1900년 10월 6일 1-2면 “론설”에서도 “가령 일국의 사람이 다 그 즈유지권의 명분을 일허바린즉… 사람마다 즈유지권이 잇스즉 군신상하와 스농공상이 다 각각 그 본분을 직히여…”라 하고 있다.

인용한 모든 예들은 ‘자유’를 개인이 당연히 소유한 권리라는 근대적 개념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¹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www.nl.go.kr/newspaper/>)’에서 ‘자유’라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면 각 시대별 ‘자유’의 사용 추이가 명확히 보인다.

<그림 1> 우리나라 신문에서 ‘자유’ 단어의 사용 추이(2021. 7. 1. 기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이고, 최초 민간발행 신문인 「독립신문」이 1896년 4월에 창간되었으며, 1898년에 와서야 「황성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이 나와 이후 점차 신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한 눈에 보이듯 1900년 전후와 1940년 전후 ‘자유’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은 일제 식민지 상황이 극에 치달을 때라 시대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럴 법도 하지만, 1900년 전후의 폭발적 증가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1890년과 1900년 사이 발간된 신문이라고는 위에 말한 다섯뿐이고, 이후 1904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 1905년 하와이에서 창간된 「공립신보」, 1906년 창간된 「만세보」 정도가 이어졌을 뿐이다. 이에 비하면 ‘자유’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의 증가는 매우 가파른 것이다. 한마디로 1900년 전후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근대 개념이 들어와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도 저들 신문 여러 곳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신문을 펴내고 읽은 사람은 당시 일부 지식인계층에 한정된다는

14) 이밖에 개화기에 근대 개념의 ‘자유’가 문헌에 나타난 예는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liberty]가 [자유(自由)]로 번역되기까지 -”를 참고 바람.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일부 사람은 선진적인 개념을 이른 시기에 받아들이나 모든 사람이 널리 받아들이고 공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신문들에서 근대적 개념의 ‘자유’를 사용하는 같은 시기에 여전히 전근대적 개념과 용례대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많이 보인다.

민영환의 『해천춘범소집』에 “고향을 생각한 나머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 더욱 간절하나 공적인 일에 몸이 매어 있으니 자유로이 할 수 없어(不得自由)…”¹⁵⁾라 한 용례가 보인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자유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기거동작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정 등에 매어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기도 하다. 이 글의 ‘자유’는 권리로서의 ‘자유’가 아닌, 전근대 용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 『속음청사』 광무10년(1906년) 5월 14일 일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때인데”¹⁶⁾라고 사용한 용례도 보인다. 1906년에도 자유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임의로, 마음대로, 멋대로’라는 전근대적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역개정』 내 ‘자유’의 이전 번역 현황

사회에서 근대개념 ‘자유’가 1890년대부터 이미 들어와 사용되었다는 것과 발을 맞추었다면, 성경번역은 『예수성교전서』를 제외한 다른 역본은 모두 그 이후이니 처음부터 ‘자유’를 활발하게 사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유’라는 단어는 총 57건 나온다. 구약에서 21건, 신약에서 36건이다. 이 57건이 이전 역본에서는 ‘자유’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개역개정』 기준으로 모세5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장, 7개의 절에 걸쳐 ‘자유’가 나온다.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자유인이 되지 않
겠노라 하면

15) 閔泳渙, 『閔忠正公遺稿』 권3, 『海天春帆小集』, 1896,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8): 思鄉之餘歸心尤切, 公事在身, 不得自由, 嗚一首却萬愁, 久離萱闈, 不肖尤大.

16) 김윤식, 『續陰晴史』,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료총서 11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0), 광무10년(1906년) 5월 14일: “所幸者今日無風, 且適值日暮, 村人自由還家之際, 人力衆多, 不至延燒…”

레 25: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54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회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신 15:12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18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의 ‘자유’를 이전 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표 1> 모세오경 중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용례.
이하, 『선한문구약』은 『선한문』, 『게일신구약』은 『게일』로 표기.

구절	『개역』 (1938)	『선한문구약』 (1926)	『게일신구약』 (1925)	『구역』 (1911)
출 21:2, 5	갑업시 나가 자유할 것이며…나가 서 자유하지 안켓노라	價가 無히 放與홀지니… 自由히지 안켓노라	갑업시 노하 自主히게 하라 …自主히기를 願치 아니히거든	즈쥬히게 하라…즈쥬히 지안켓노라
레 25:10, 54	전국 거민의게 자유를 공포하라…그 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 家業과 家族의게 歸去히고…彼 와 그 子女가 自由히리라	人民으로 自主케 히고…自主히 리라	모든 인민으로 즈쥬케 히고…즈너로 더브러 다 나갈 거시라
신 15:12 -13, 18	그를 노하 자유하게 할 것이오…노하 자유하게 할…노하 자유하게 하기를	彼를 釋히야 써나 自主히게 하라 …彼를 釋히야 爾를 離히야 自主케 홀 時에는…彼를 釋히야 써나가서 自由케 함으로	放釋히야 自主케 히딕, 空手로 보내지…더를 放釋히기를	노하 써나 자쥬히게 하라…너를 써나 즈쥬케 할…더를 노하 써나가서 즈쥬케 함으로

어휘만 정리해 보면, 이전 역본들에서는 각 맥락에 따라 방여(放與, 놓아 주다), 노하 自主하게, 가업과 가족의게 귀거(歸去), 자주(즈쥬, 自主), 자유, 방석(放釋)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가 『개역』부터는 모두 ‘자유’라고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인이라는 언중들이 ‘방여(선한문 출 21:2), 가업과 가족의게 귀거(『선한문』 레 25:10), 자주(『게일』&『구역』 출

21:5; 레 25:10; 신 15:12), 자유(『선한문』 출 21:5; 레 25:54; 신 15:18)’ 등으로 쓰던 것들이 성경에서는 1938년 『개역』부터 ‘자유’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신약에서 예를 찾아도 상황은 같다. 『개역개정』 로마서 8:21, 고린도전서 8:9에서 ‘자유’로 표현된 곳이 이전 역본에서 다음처럼 되어 있다.

<표 2> 롬 8:21, 고전 8:9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이하, 『국한문신약』은 『국한문』, 『예수성교전서』는 『성교』로 표기.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신약』 (1906)	『구역』 (1911)	『예수성교전서』 (1887)
롬 8:21	종노릇한 대서 해방되어 …자유에 니르는	종됨을 將次 버셔나…自 主張함에 니를 거시라	奴隸됨을 將次脫出하 야…自主張 함에 至함이니라	씩어짐의 종됨을 장춧 버셔나 …즈쥬장함 에 니를 거시니라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못 아달의 영화에 자유함물 바리리라
고전 8:9	너희 자유함이	너희 自由함이	爾等의 自由함이	너희 즈유함이	너희 자형자지함 다가

표에서 보듯, 로마서 8:21을 ‘버셔나(『개일』), 즈쥬장(自主張: 『국한문』), 자형자지(『성교』)’ 등 다양한 어휘들로 표현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것이 『개역』에서 ‘자유’로 통합된 후 『개역개정』에서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자가 『개역개정』에서 ‘자유’가 나오는 곳을 모두 정리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수성교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쓴 용례가 전혀 없고, 『구역』부터는 ‘즈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어휘로 표현된 경우가 매우 많았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도 나오고 다른 어휘로 표현된 것도 많이 나왔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에 나온 『개역』에서 상당수 어휘가 ‘자유’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개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어휘가 ‘자유’로 바뀐 것은 아니다. 어떤 구절은 『구역』부터 『개역개정』까지 시종일관 ‘자유’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개역개정』에서야 처음으로 ‘자유’로 표현된 것도 있다(갈 3:28의 경우). 심지어 『개역』에서 ‘자유’로 쓰였던 것이 『개역개정』에서 ‘자유’가 아닌 다른 어휘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역』을 기준으로 ‘자유’라는 어휘로 본격적으로 통합된 것은 확실하다.

정리하자면,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표현된 어휘는 이전 역본에서는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던 것들이 대체로 1938년 『개역』부터 ‘자유’로 귀결된 것이다. 또, 기독교에서 ‘자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 말부터였으며, 「독립신문」 등 외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비해서 매우 늦은 것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특이한 점이다. 시기 문제는 2, 3장의 비교로 정리되었고, 이제 이전 역본에서 사용된 어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 정리해 보겠다.

4.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통합된 어휘들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표현된 57건이 이전 역본에서는 어떤 어휘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특정 어휘가 동일하게 바뀐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요, 현재 ‘자유’로 통합된 어휘가 이전에는 다른 어휘로 쓰인 **예를 확인**해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판본, 같은 맥락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나타나는 것에 구애 받지 않는다. 이 작업은 ‘자유’로 통합된 어휘 예들을 망라,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1. ‘자유’에서 ‘자유’로 유형: 즈유(自由)ᄇᆞᆫ, 임의(任意), 자행자지(自行自止)

4.1.1. 즈유(自由)ᄇᆞᆫ, 즈유함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표현된 부분 중 일부는 이전 번역에서도 ‘자유’로 번역되었지만 『개역개정』보다는 훨씬 적은 부분에서만 사용되었다.

예컨대 욱기 39:5에서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에서 이전 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자유’를 그대로 썼다.

<표 3> 욱 39:5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선한문』 (1926)	『개일』 (1925)	『구역』 (1911)
욱 39:5	노하 자유하게 하였느냐	放ᄇᆞᆫ야 自由ᄇᆞᆫ게 ᄇᆞᆫᄃᆞᆫ스며	어거함을 맞지 아니ᄇᆞᆫ고 自由ᄇᆞᆫᄃᆞᆫ이여	노하 자유ᄇᆞᆫ게 ᄇᆞᆫᄃᆞᆫ스며

『개역』 전에 나온 번역본에서는 이처럼 ‘행동거지의 문제’일 때 ‘자유’라는 단어를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

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를 보자.

<표 4> 고전 8:9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게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고전 8:9	너희 자유함이	너희 自由함이	爾等の 自由함이	너희 자유함이	자행자지행 다가

율법에 얽매여 행동거지가 불편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을 먹든지 그 ‘행동거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애됨이 없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때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이 예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를 명사형으로 사용한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자유가’라고 하여 ‘자유’를 ‘명사’로 썼지만, 이전 본에서는 모두 ‘자유함이’으로, 즉 동사의 명사형으로 표현했다. 전근대시기에 사용되던 어휘 ‘자유’는 명사가 아닌 것이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4:22는 『개역개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라고 하였다. 자유 ‘있는’이라고 했으니 ‘자유’가 명사로 굳어진 것인데, 이전 본에서는 모두 자유‘하는’이라고 표현했다. 이때까지도 ‘자유’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던 것이다. 참고로 『예수성교전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의미’를 살려 표현하여 부인/첩의 대비 중 ‘자유하는 여인’은 ‘부인에게서 난 자’라는 맥락으로 번역했다.

<표 5> 갈 4:22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게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갈 4:22	자유하는 녀자의게서	自由하는 女人의게서	自由하는 女人	자유하는 녀인의게서	하나은 부인의게 났난디

요컨대 이처럼 주로 좁은 의미의 ‘행동거지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역』 이전 역본에서도 ‘자유’라는 표현을 써서 번역하되, 명사가 아니라 활용형으로 사용하였다. 현대에 와서 ‘자유’를 근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의미에서뿐 아니라 품사의 변화도 생겨서 명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4.1.2. 마음대로, 임의(任意), 자행(自行), 자행자지(自行自止)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라는 단어가 전근대시기에 쓰이기는 했으나, ‘신체 움직임의 구애’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쓰이는 어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전근대시기 ‘자유’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어휘였다. 이 경우 ‘자유’의 의미는 ‘자유롭게’가 아니라 ‘마음대로, 멋대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한자사전에서 ‘자유’를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 혹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이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전근대적인 ‘자유’의 용례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종 때 “처(妻)인 기씨의 성품이 매우 사나웠으므로 정효상이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첩을 두지 못하였으며, 집안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¹⁷⁾라 한 대목이 나온다.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번역한다. 이 시대에는 근대적 의미의 ‘자유’개념이 유입되지 않았고, ‘자유’는 행동거지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므로 번역을 그렇게 해야 옳다. 마음대로를 달리 표현하면 ‘임의’대로가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自行自止)가 되므로, 오늘날 ‘자유’로 표현된 그 자리에 이 어휘들로 표현했다.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말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번도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성경은 1880년대에 번역되었고, 이때에는 ‘천부인권’,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권리’라는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개념은 유입되지 않았거나 그 의미 전파가 미미할 때였다. 그래서인지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고, ‘멋대로, 마음대로’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구역』 등 다른 번역본에서 ‘자유’를 써서 표현한 자리에 ‘임의’나 ‘자행자지’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앞선 예에서 고린도전서 8:9와 갈라디아서 4:22의 표를 보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본에서는 ‘자유’를 쓰고 있는데,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자행자지’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 맥락을 살펴서 아예 ‘자유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종인 여인은 ‘첩’으로 구분해서 썼다.

『예수성교전서』 외의 역본에서 ‘임의’를 사용한 예가 있다. 사도행전 24: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에서 그 사례가 보인다. 이 구절에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자유’라고 번역한 대목을 『국한문신약』과 『구역』에서는 ‘임의대로’로 번역하였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

17) 『성종실록』 12년 1월 4일: 妻奇氏, 性極悍, 孝常畏懼, 平生未嘗畜妾, 家事亦不得自由.

서 ‘자유’로 통합된 어휘 중 ‘임의’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에 대한 한 예가 된다.

<표 6> 행 24:23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행 24:23	자유를 주며	너그리히 직혀	任意대로 흥게 흥야	임의대로 흥게 흥야	느즐어이 흥여

물론 이 구절은 ‘자유’로 번역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다른 경우이다. 대부분의 구절은 원어로 볼 때 ‘자유로운, 면제된’ 등의 의미를 지닌 ἄριστος(호프쉬),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ἐλευθερώω(엘류테로오) 등의 원어를 ‘자유’로 번역한 것인데, 이 대목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이 대목에서 ‘자유를 주고’로 번역된 원어는 ‘자유, 평안함, 구제’ 등으로 번역되는 ἄνεσις(아네시스)이다. 그런 차이에 주목하여 『개일신구약』은 ‘너그리히’로 『예수성교전서』는 ‘느즐어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이 대목에서 『국한문신약』과 『구역』은 ‘임의’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던 것이 『개역』 이후에 ‘자유’로 통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시편 119:45도 원어가 전혀 다른데 현행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하고 있다. 구역에서는 ‘넓은 곳에 흥 흥리이다’라 하였고, 국한문신약에서는 ‘廣 흥 處에 行 흥리이다’라 하였으며, 『개일신구약』에서는 ‘平安 흥 길노 行 흥리로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에 와서 ‘자유롭게 행보할’이라고 번역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2. ‘자주’에서 ‘자유’로 유형: 즈쥬(自主), 즈쥬장(自主張)

출애굽기 21:2, 5나 신명기 15:12-13, 18을 보면 『구역』과 『개일신구약』에서 ‘즈쥬(自主)’로 번역되었다. 신명기 15장의 예로는 『선한문구약』도 ‘자주(自主)’로 썼다.

『개역개정』에 ‘자유’로 표현된 것 중 ‘중’에 대한 대칭의 의미로 ‘중이 아닌 자’라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자유’를 사용하여 ‘자유인’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전 번역본에서는 ‘자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주자(自主者) 혹은 자주지인(自主之人)이라 했다. 즉 성경에는 ‘중’에 대한 대칭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경우 ‘자주자’, ‘자주인’, ‘자주지인’이라고 표현하였다가 『개역개정』에 와서야 ‘자유인’으로 번역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11 ‘거기에는…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 한 대목에서 ‘자유인’으로 표현한 것을 이전 역본에서는 이렇게 썼다.

<표 7> 갈 3:28, 골 3:11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갈 3:28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自由호는 者나	奴隸나 自由호는 者나	종이나 즈쥬호는 자나	주인과 종이며
골 3:11	종이나 자유인이	종이나 自主호난 者	奴隸나 自主之人 이	종이나 즈쥬지인 이	자유호는 자를

‘종이나 자유자이나’ 하는 대목이 성경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전 번역본에서는 ‘자주’로 표현되었다. 갈라디아서 3:28에 대해서 『개역』과 『구역』에서 ‘자유자, 즈쥬호는 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아예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골로새서 3:11은 『개역』 이전에 나온 본들인 『개일신구약』과 『국한문신약』, 『구역』, 『예수성교전서』에서 모두 ‘자주’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종이나 자유자’로 표현된 것이 이전 본에서 ‘종이나 자주자’로 표현된 예가 매우 많다. 요한계시록 6:15 등에서 그렇다.

물론 한 번역본에서 ‘종이나 자유자’라는 대목에 대해 모두 ‘자주자’로 통일하고 있지는 않다. ‘자유’가 아닌 ‘자주’로 구별되어 쓰는 용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 또 이전에 나온 번역일수록 ‘자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의미 있다. 나중 번역이 나오면서 이전에 ‘자주’로 사용하던 것까지 ‘자유’로 점점 통합해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이나 자유자나’ 하는 부분에서만 ‘자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39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전 번역에서는 ‘자주’로 번역한 것이 나온다.

<표 8> 고전 7:39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고전 7:39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뜻대로	남편이 죽으면 自主호느니	夫가 死호면 自主호야	남편이 죽으면 즈쥬호야	지아버가 죽으면 능히 임의로

이처럼 ‘자유’가 아니라 분명 ‘자주’로 구분해서 쓴 부분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자주’는 성경이 번역되던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때에 사용되었을까?

전근대시기 용례로 볼 때 자주는 ‘자주장(自主張)’의 준말이다. 즉 자주는 ‘스스로 주장하다, 스스로 주관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근대에서 이것을 줄여 ‘자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자주’라는 단어는 ‘주장’이라는 단어가 드러내 주듯, ‘강한 의지 표현’이다.

이런 뜻이 남아 있는 예도 많다. 로마서 8:21을 1906년에 나온 『국한문신약』에서는 ‘그 望호는 거슨 此萬物이 朽了호의 奴隸됨을 將次脫出호야 上帝의 衆子女의 榮光을 得호야 自主權호에 至호이니라’라 하였고, 1911년 『구역』에서는 ‘즈쥬장호에 니를 거시니라’ 하였으며, 1925년 『개일신구약』에서도 ‘自主張호에 니를 거시라’라 하였다가, 1938년 『개역』 이후 지금까지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요컨대 현재 ‘자유’라고 쓴 부분이 전에는 ‘자주’, 즉 ‘자주장’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하겠다’라는 것은 의미 차이가 있다. 후자가 ‘자주장’, 즉 ‘자주’의 뜻이다. 이렇게 ‘자주장’은 ‘자주’라고 표현되던 단어와 개념이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되었다. 즉 현재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된 것은 본래 ‘자주(장)’로 번역되던 단어로, ‘주권’, ‘주장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서 위에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종’과 대비되는 차원의 사람을 표현할 때 ‘자주’라고 표현하여, 주인의 뜻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종’과 달리 ‘스스로 (판단, 결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종의 대책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자리에 ‘자유’가 보이거든, 이 단어는 ‘주관, 주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여러 예를 살펴 볼 때, 『개역』까지만 ‘자주’를 사용하고, 『개역한글』부터 ‘자유’로 바꾼 부분도 있고, 『개역한글』까지 모두 ‘자주’로 사용했다가 『개역개정』에 와서야 ‘자유’로 바꾼 예도 많다. 『개역』이 1938년인데,

그때까지는 성경번역자들이 ‘자유’로 바꾸기를 피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4.3. ‘방석’에서 ‘자유’로 유형: 방석(放釋), 놓다(釋, 放), 놓아주다(放與), 놓아 보내다(放送), 풀어놓다(解放), 벗어나다(脫出)

4.3.1. 방석(放釋)

방석을 한자 그대로의 의미로 풀면 ‘놓다, 놓아주다’인데, 방석을 ‘놓아주다’로 번역할 수는 있을지언정, ‘놓아주다’가 ‘방석’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근대시기 방석은 법적으로 ‘결정권자’가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석방’한 경우에만 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방석은 죄인을 ‘석방’한다는 의미의 정식 법률용어이다.

각종 법전에서나 『실록』에서 ‘방석’이 그렇게 사용된 용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대전회통』 중에서 『형전(刑典)』 ‘홀수(恤囚)’ 항목에 ‘죄목이 가벼우면서 병이 매우 깊은 자는 방석한다’는 대목이 있다. 또, 『숙종실록』에 ‘사간 권유·헌납 김해일·정언 오시대 등이 또 홍득우 등을 방석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¹⁸⁾라 한 것에서처럼 결정권자가 공식적으로 ‘석방’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방석’이라고 쓴다.

성경 번역에서도 ‘방석’이라는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한 예가 있다. 예컨대 예레미야 34:8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라고 된 구절을 이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다.

<표 9> 렘 34:8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선한문』 (1926)	『개일』 (1925)	『구역』 (1911)
렘 34:8	왕이...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放釋호는 規例를 告示호는 後에	放釋호는 規例를 宣播호는	방석호는 규례를 고시호는 후에

‘왕’이 공식 명령으로 풀어준 것이므로 ‘방석’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살려서 쓴 것이 보인다. 시편 105:20에 대해서는 『개역』과 『개일신구약』이 그

18) 『숙종실록』 2년 7월 29일: 諫權愈獻納金海一正言吳始大等, 又請還收洪得禹等放釋之命, 不允.

어휘를 살려서 표현했고, 예레미야 34:8에서는 『선한문구약』과 『개일신구약』, 『구역』에서 모두 방석을 살렸다. 법률용어라 ‘방석’하는 ‘규례’라고 하여 공식 명령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실어 ‘규례’라는 표현까지 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결정권자의 공식 결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방석’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사야 61:1 등 여러 곳에 보인다. 앞의 2장에서 설명한 대로, 전근대시기 ‘방석’은 ‘자유’와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 단어였다. 갇힌 자를 풀어줄 때에는 법률 용어인 ‘방석’만을 썼다. 만약 ‘자유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면, 감옥 등 갇힌 곳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신체 움직임’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게 하다’는 의미이다. 그런 구분에 따라 이전 번역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방석’으로 표현했었는데, 『개역』에서는 이것까지 ‘자유’로 통합되기도 했다. 이 시기쯤에는 ‘방석’이라는 전근대식 법률용어를 언중들이 모르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유’에 ‘석방’의 의미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4.3.2. 놓다·놓이다(釋, 放), 놓아주다(放與), 놓아 보내다(放送), 풀어놓다(解放)

‘놓아주다’는 말인 방여(放與)나 ‘놓아 보내다’는 말인 방송(放送), ‘풀어놓다’는 말인 해방(解放) 등은 ‘한국식 한자어’ 표현이다. 이 단어들뿐만 아니라 한 글자만 활용하여 ‘놓다’는 말인 ‘방(放)’을 번역본에서 표현한 것도 매우 많다.

이들은 앞에서 말한 ‘방석’과 번역의미가 같으므로 한 유형으로 묶었다. 하지만 의미는 같으나 활용면에서 ‘방석’은 법률용어로 쓰인 것이고, ‘놓다, 풀어주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나머지 부분은 이 어휘들을 썼다. 복음의 영향을 ‘죄에 묶인, 죽음에 묶인’ 자에 대한 해방의 의미로 설명하는 성경구절이 많기 때문에 ‘놓다’ 등의 어휘가 자주 쓰였다.

예를 들어 이사야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대목에서 ‘자유하게’는 이전 본에서 아래와 같이 ‘놓아 보내다(放送)’ 등으로 쓰였던 어휘가 『개역』부터 오늘날과 같이 ‘자유’로 통합된 것이다.

<표 10> 사 58:6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선한문』 (1926)	『게일』 (1925)	『구역』 (1911)
사 58:6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虐待 受호는 者를 放送호며	虐待 맞는 者를 노하보냄이	학디 맞는 자를 노하보내며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복음의 핵심 구절 중 ‘자유’를 사용한 대표적 예인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부분을 보자. 『개역』 이전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놓다’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표현했다.

<표 11> 요 8:32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게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요 8:32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노하주리 라	眞理가 爾等을 釋호리라	너희를 노하주리 라	너희랄 놓게호리 라

『개역』 이후 지금까지 이 구절은 ‘자유케 하리라’의 ‘자유’로 표현되었지만, 『게일신구약』이나 『구역』, 『예수성교전서』에서는 ‘놓아주다’로 표현했고, 『국한문신약』에서는 ‘놓다’는 의미로 ‘석(釋)’으로 번역했다. 이 구절의 앞뒤 맥락까지 살펴보면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대목과 대비되어 복음이 그것에 대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설명한다. 그래서 ‘죄에게 얽매이는 것’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로 ‘놓이다’로 번역했다.

4.3.3. 벗어나다, 탈출(脫出)

‘벗어나다’는 ‘놓이다’와 비슷한 듯하지만 ‘어떤 힘이나 영향의 구속 밖으로 빠져나오다’, ‘영향권의 범위를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좀 더 부각된다. 이 예는 로마서 번역에서만 사용되었다는 특징도 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볼 때 ‘놓다, 놓이다’와 다른 ‘벗어나다, 탈출하다’로 구별하여 표현할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마서 6: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7:3 (‘남편 있는 여인이’)…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같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대목에

서 ‘자유’로 쓴 부분은 이전 역본들에서는 ‘벗어나다(脫出)’라는 어휘로 표현한 것들이다.

<표 12> 롬 6:20, 롬 7:3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롬 6:20	의에 대하여 자유하엿나니라	義에서 버셔났섯느니라	義에서 脫出하엿느니라	의에서 버셔났나니라	의에 못지 안으미라
롬 7:3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 法에서 버셔났스니	其法에서 脫出하엿느니	법에서 버셔났느니	버셔느니

앞서 3장에서 예를 든 로마서 8:21에서도 같은 예가 나온다. 또 로마서 6:18과 로마서 8:2는 『개역개정』, 『개역』에서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어휘가 『개일신구약』이나 『국한문신약』 및 『구역』에서 모두 ‘버셔나게, 탈출하게’로 쓰였던 것이다.

요컨대, 현재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된 어휘 안에는 이전에 ‘벗어나다(脫出)’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기타 유형: 복호(復戶)하야, 리버티노(리버디노)

이상 분류 이외 다른 어휘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자유’로 통합된 사례가 둘 있다. 각각 한 용례만 나오므로 따로 유형분류 하지 않고 기타로 묶어 제시한다.

하나는 사도행전 6: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전 본에서는 모두 원어를 임차해서 표현한 경우이다. 원어 Λιβερτινος(리벨티노스)에서 유래하여 당시 그런 신분층을 부르는 원어를 음역해 쓰다가 『개역개정』에 와서야 ‘자유민들’로 썼다.

<표 13> 행 6:9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개일』 (1925)	『국한문』 (1906)	『구역』 (1911)	『성교』 (1887)
행 6:9	리버디노	리버디노	리버디노	리버디노	리빌디니

이 사례는 의미상으로 분류하면 신분적 개념이므로 4.2의 ‘자주’로 분류될 것이나, 여기에서는 어휘 용례 사례를 분류하므로 따로 기타로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복호(復戶)’로 번역한 경우이다. 앞에서 논자는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된 것 57건을 조사하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유’라는 어휘에 어떤 것들이 포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몇몇 것들이 더 추가될 것이 있다. 사무엘상 17:25가 그 경우인데, 이 구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 대신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라고 번역했다. 이 구절은 『개역』에서는 ‘자유’로 번역되었다가 『개역개정』에서 다시 지금처럼 바뀐 경우이다. 이 구절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특이한 용어가 나온다.

<표 14> 삼상 17:25 속 ‘자유’의 역본별 변천과정

구절	『개역』 (1938)	『선한문』 (1926)	『계일』 (1925)	『구역』 (1911)
삼상 17:25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其父의 家를 復戶 ^{호야} 주리라	그 아버의 집을 復戶 ^{호다더라}	그 아버의 집을 복호 ^{호여} 주리라

『구역』부터 『선한문구약』까지 공통되게 ‘복호(復戶)’로 표현하다가 『개역』에 와서 ‘자유’로 통합하였다.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그 ‘자유하게’라는 표현을 다시 고쳐 ‘세금을 면제하게’로 고쳤다. 『개역』의 예로 살필 때 성경번역자들이 ‘자유’라는 단어가 복호의 개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복호는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각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과 각종 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요역은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토목 공사나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는 노역인데, 각 호마다 부과되는 그 호역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라 복호라고 했다. 왕족이나 충신, 효자, 열녀가 나온 집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이 혜택을 준다.

사무엘상 17:25에서 사용된 원어는 חָפְשִׁי(호프쉬)인데, 이 부분에서 이 단어가 ‘면제된’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하여 이전 번역본들에서는 그와 비슷한 ‘복호(復戶)’라는 제도용어로 번역했던 것이다. 현지 문화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현지의 용어로 번역한 예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을 『개역』에서는 ‘자유’로 고쳤다. ‘자유’에도 그런 뜻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역개정』 번역자들은 ‘자유’에 그런 뜻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원어의 의미와 다르다고 판단했는지 그것을 다시 ‘세금을 면제하게’로 돌렸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자유’라는 용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번역 과정에서 ‘자유’의 어휘변화를 볼 때 유의미한 예이다. 동시에 이 단어는 현지의 문화 사정을 고려하여 번역을 했던 이전 본과는 달리 ‘복호’라는 제도를 버리고 그 의미만 살려서 ‘세금을 면제하게’라고 번역한 예이다. 물론 ‘복호’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는 현대인이 대다수라는 기준도 작용했을 것이나, 어쨌든 이전의 ‘현지화 번역 원칙’과는 다른 번역 기준이 적용된 예가 된다.

5. ‘자유’의 역본 역추적 어휘 갈래 분류의 활용과 의의

5.1. ‘자유’의 어휘 갈래를 고려한 성경 읽기의 예

서론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읽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 분류가 보다 명확한 이해를 낳는다는 점을 말하며 이 연구가 원어를 모르는 한국독자들의 성경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제 앞의 본문에서 구분하여 확인한 어휘 갈래를 통해서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의의를 몇 가지 예로 제시해 보겠다.

고린도전서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에서 ‘자유’를 긍정적 맥락에서의 ‘권리’로 이해하면 오해이다. 이때에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라는 뜻이다. 『예수성교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자칭자지히다가’로 번역했다. ‘자유’에 ‘임의대로’류의 의미 갈래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 부분을 ‘내가 내 멋대로 하여 다른 사람이 그릇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는다면 보다 정확한 이해에 닿을 수 있다.

요한복음 8:32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그리스도교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대목일 것이다. 이 때 ‘자유하게 하리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로 읽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앞뒤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듯, 죄에게 묶여, 죄의 종이 된 상태였던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다’를 의미한다. 『개역』 전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놓

아주다(放, 釋)’로 썼던 부분이다. ‘자유’에 통합된 의미 갈래 중 ‘놓아주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면 오역을 막을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한 고린도교회의 물음에 답변하였는데, 그 중 7:39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유로워’는 단순히 ‘풀려났다’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개역』에서조차 ‘자기 뜻대로’로 번역했고, 이전 역본에서는 ‘자주(自主)’하야 라고 번역했던 부분이다. 현행 ‘자유’에 이렇듯 ‘개인의 의지’를 강조한 ‘자주’라는 의미 갈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런 부분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로마서 6:20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라 하였는데, 이 때 ‘자유로웠느니라’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이 부분을 의에 대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자유’로 통합된 어휘 갈래 중 ‘영향권 범위를 벗어나다’의 의미로 읽을 대목이다. 『개역』 전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벗어나다(脫出)’로 썼던 부분이다.

이처럼 ‘자유’라는 단어로 귀결된 어휘 유형에 유의하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을 것이다.

5.2. ‘자유’라는 단어 수용 시기의 특징과 의미

『예수성교전서』부터 『구역』까지 약 20년, 『구역』부터 『개역』까지 27년, 『개역』부터 『개역한글』까지 24년, 그리고 『개역개정』까지 37년이다. 『개역한글』은 대체로 『개역』의 표기법만 바꾼 것이니 『개역』부터 『개역개정』까지 61년이다. 각 역본에서 사용한 단어는 20~60년 동안의 사회의 변화, 언종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런 변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개념의 ‘자유’ 유입시기와 한글 성경의 번역에 사용된 어휘 부분을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미 1890년에 이미 근대 개념으로서의 ‘자유’ 개념이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그 시기에 한글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으며, 1890년대와 비교하자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여러 한글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렇지만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근대 개념’의 자유가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기였으나, 초기 한글성경에서는 ‘자유’라는 단어의 사용

을 극히 피하였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둘째, 각 문맥에 따라 여러 다른 어휘로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다가 대부분 『개역』에서 ‘자유’로 통합되었다. 한국 교회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사용을 대체로 수용하고 사용한 것이 1930년대 후반부터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속도에 비할 때 매우 늦은 시기에 교회는 ‘자유’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일반적으로 매우 진보적이다. 신분 사회에 인간의 평등을 말하고, 경쟁 시기에 원수 사랑을 말하며,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을 말하는 등 기독교 복음은 매우 진보적인 특성을 지녔다. 그런 복음이 조선과 대한제국에 전해지면서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근대개념의 대표적 단어라 할 수 있는 ‘자유’의 경우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있던 단어에 새로운 개념을 넣으면, 그것이 완전히 받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전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새로 담긴 개념에 이상을 느끼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며,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언중이 오해 없이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천부인권적 권리’ 개념을 담은 ‘freedom’이나 ‘liberty’에 대한 번역어로 사용한 ‘자유’야 말로 그런 단어였다. 근대 개념이 우리 땅에 들어와 퍼져나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자유’의 근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경우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언중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거동작’의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적으로 사용되고 ‘부정적’ 뉘앙스의 ‘멋대로’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어휘였기에,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전에 사용된 용례와 새로 들어온 개념 사이의 충돌과 오해가 불가피했다.

이런 충돌과 오해가 다 해결되지 않은 때에 한국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 성경번역본에서는 진리의 오해를 방지하고, 개념의 왜곡을 막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 선택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매우 주의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자유’의 개념을 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때여서, 그리고 본래 사용하고 있던 ‘자유’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여서 그 사용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마다 달리 이해하고 오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왜곡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단어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일 때 ‘자유’라는 단

어를 폭넓게 사용했을 것이다. 성경번역본으로 보면 이 시기가 대체로 『개역』이 나온 때이다. 성경번역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그때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이 단어로 통합된 어휘들을 정리하였다. 앞선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중 의미 있는 것 몇 가지를 정리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첫째, 현재 『개역개정』에서 ‘자유’로 번역된 것은 사실 여러 어휘 갈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 번역본에서 사용된 어휘를 볼 때 기거동작을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의 ‘자유’, 개인의 의지대로 한다는 ‘자주’, 법률 용어로서 공식 석방을 나타내는 ‘방석’, 풀어준다는 의미의 ‘방여’,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출’ 등의 의미가 나중에 ‘자유’로 포괄되었다. 현재 『개역개정』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 사실은 위와 같은 몇 갈래의 의미를 통합한 포괄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 해당 문맥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류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낳는다.

둘째,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890년대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성경번역자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의 사용을 극히 피하였다가 1938년 『개역』에 이르러서야 ‘자유’라는 어휘를 많이 받아들여 썼다. ‘자유’라는 단어의 전근대적인 의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자유’를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하다가 비교적 오해 없이 그 의미가 이해될 즈음에야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성경번역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당시 사회, 언중들의 경향을 세심히 살피면서 언어 사용을 매우 정밀하게 함으로써 성경 진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복음은 매우 진보적인 특성을 지녔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성경의 언어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사라져버린 개념들이나 단어들의 흔적을 찾을 때 성경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을 염두에 두면서 어휘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원문의 원어를 병행 대조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나 지면의 제약도 있고, 이 논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도 약간은 벗어나므로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

<주제어>(Keywords)

성경번역어, 어휘계통, 근대개념어, 자유, 자주, 방석.

translated words of Korean bible, vocabulary system, freedom, liberty, independence, release.

(투고 일자: 2022년 1월 20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예수성경전서』, J. 로스 외 역, 성경: 문광서원, 1887.
- 『新約全書 국한문』, 1906. (국한문신약)
-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구역)
- 『新譯 新舊約全書』, 奇一 역, 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계일신구약)
- 『鮮漢文 貫珠 舊約全書』, 京城: 大英聖書公會, 1926. (선한문구약)
- 『성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개역)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제4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 서울: 탐구당, 1970.
- 김윤식, 『續陰晴史』,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료총서 11,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0.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2021. 7. 1.)
- 김현진, “회년의 선교적 의미와 실천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1 (2020), 629-654.
- 閔泳煥, 『閔忠正公遺稿』,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8.
- 박정식, “요한복음 8장의 아버지 논쟁에 나타난 자유의 의미”, 『광신논단』 30 (2020), 49-74.
- 沈之奇, 『大清律輯註』, 北京: 法律出版社, 2000.
- 야나부 아키라, 『Freedom, 어떻게 自由로 번역되었는가』, 김옥희 역, 서울: AK, 2020.
- 유경민, “‘自由’의 용언형과 다의화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 『언어와 언어학』 94 (2021), 45-72.
- 이영현, “바오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로 선포한 자유에 대한 성서적 고찰: 갈라티아 서간에 따라 살펴본 자유개념과 신학적인 의미”, 『신학전망』 164 (2009), 2-28.
-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liberty]가 [자유(自由)]로 번역되기까지 -”, 『비교일본학』 42 (2018), 353-372.
- 최재복, “근대기 번역어 ‘자유’ 개념의 성립과 중국 유입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9 (2005), 385-404.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Use of the Word “Jayu”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nd Its Earlier Versions**

Shin-Hye Seo, Sun-Hui Yi
(Hanyang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when the word *jayu* (자유 meaning freedom/liberty) was used in Bible translations,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it has arrived at its current use.

First, it was revealed that in comparison of the time when modern concept of freedom was introduced in Korea, *jayu* was used later in the Bible. The words freedom and liberty from the West were translated as *jayu* in the East, and *jayu* in its modern concept was already used in the 1890s in various places like Korean newspapers and so forth. However,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use of *jayu* in early Korean Bible translations was very limited, and that it came into wider use only in the KRV (1938).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phrases expressed as *jayu* in the NKRV were largely expressed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vocabulary in earlier translations, and that these merged into *jayu* only later on.

The three types are as follows: The first refer to cases where initial translations were done as *jayu*. The word *jayu* had been used since the pre-modern period to only signify the *possibility of acting freely* with negative connotation of *doing as one pleases; without restraints; in random manner, etc.* When referring to matters of behavior, it was translated into *jayu* or *imui* (임의 meaning arbitrarily) in early translations.

Next type includes cases where initial translations as *jaju* (자주 meaning autonomy) later merged into *jayu*. *Jaju* emphasizes individual's will. When conveying that the person is not a slave, but a person who can decide for his/herself, it was often translated as *jongina jajujana* (종이나 자주자나 meaning either a slave or an autonomous person) to contrast it being an opposite concept of slavery.

Last type refer to initial translations into *nota* (놓다 meaning to release) which were later merged into *jayu*. In the pre-modern period, the legal term

bangseok (방석 meaning to release) was used when the person of authority is officially releasing criminals. In other instances, various words meaning to release, be released, to set free were used in early translations.

Through the above two findings, this study was able to arrive at two meaningful conclusions. First, it revealed Bible translators' efforts to reduce misunderstanding of the Gospel by persistently avoiding the use of one word. Second, it presented an example for the current readers of the Bible to understand the Bible more accurately by knowing how different branches of vocabulary merged into the word *jayu*.